

2025년 상반기(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상반기(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교 육 감

직인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5년 상반기(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2024. 10.

유 초 등 교 육 과
중 등 특 수 교 육 과

2025년 상반기(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요약)

【2024. 10. 유초등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74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36조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34084호, 시행 2023.12.29.)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교육부훈령 제511호, 시행 1994.12.1.)

명예퇴직 대상자

- 20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예정일: 2025. 2. 28.

명예퇴직 시행 일정

- 공고 기간: 2024. 10. 28.(월) ~ 11. 18.(월), [22일간]
- 신청(접수)기간: 2024. 11. 19.(화) ~ 11. 28.(목), [10일간]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통지

- 명예퇴직 제외 대상 조회 및 확인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
-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교육지원청과 소속 학교에 통지

명예퇴직 수당 지급: 퇴직일에 지급

목 차

I. 근거 및 현황	1
1. 근거	1
2. 현황	1
II. 명예퇴직 대상자	1
1. 신청 대상자	1
2. 지급 제외자	1
3. 환수	2
4. 명예퇴직 예정일	3
III. 명예퇴직 시행 일정	4
IV. 명예퇴직 신청 절차	4
V.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통지	6
VI.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7
VII. 행정사항	8
[서식] 관련 서식(1-7)	11
[참고자료 1] 작성요령	20
[참고자료 2] 총재직기간 확인서류 출력 방법	22
[참고자료 3] 교원 봉급표	23

2025년 상반기(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I 근거 및 현황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74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제36조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34084호, 시행 2023.12.29.)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교육부훈령 제511호, 시행 1994.12.1.)

2. 현황

가. 2024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			중등			계		
	신청	확정	수당	신청	확정	수당	신청	확정	수당	신청	확정	수당
2024.2월말	2	2	200,547	52	50	5,382,416	41	41	3,747,223	95	93	9,350,186
2024.8월말	0	0	·	14	14	1,325,793	16	14	1,176,648	30	28	2,502,441

나. 2025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요조사 현황

(기준일: 2024년 7월말)

구분	유	초	중	고	특	전문직	소계
2025.2월말	1	36	19	8	0	0	64
2025.8월말	0	5	2	1	1	0	9
계	1	41	21	9	1	0	73

II 명예퇴직 대상자

1. 신청 대상자

- 20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2. 지급 제외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 제외사유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이 기준시점이 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하더라도 명예퇴직일(2025.2.28.)까지 제외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수당지급 결정이 취소되어 명예퇴직이 불가함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환수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형벌사실의 확인

○ 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형벌사실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5)

○ 확인 결과 명예퇴직일 전에 이미 수사 또는 기소 중이었거나 명예퇴직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이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 형벌사실의 확인은 명예퇴직 후 5년까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기소·재판 중인 경우 동 재판이 종결 때까지 형벌사실 확인을 계속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명예퇴직 예정일: 2025. 2. 28.

III 명예퇴직 시행 일정

1. 공고 기간: 2024. 10. 28. [월] ~ 11. 18. [월], [22일간]

2. 신청(접수)기간: 2024. 11. 19. [화] ~ 11. 28. [목], [10일간]

3. 제출처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공립) 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공립) 고등학교, 특수학교, 중등 교육전문직원: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2024. 12. 6.(금)까지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로 제출

IV 명예퇴직 신청 절차

1. 신청 절차

(유·초·중학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교육감]에게 제출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들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2. 제출 서류

- 학교: 모든 서류는 인편 제출하되, 제출 서류 ‘가, 나, 사, 아’ 는 공문에도 첨부하여 제출
-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유치동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에 별도 공문 시행 : 모든 서류는 인편 제출, 제출 서류 ‘가, 나, 사, 아’ 는 공문에도 첨부하여 제출

- 가. 별첨1(엑셀): 명예퇴직 수당 계산서 1부.
- 나. 별첨2(엑셀 및 원본): 명예퇴직원 제출자 명단 1부.
- 다. 서식1(원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자필 작성) 1부.
- 라. 서식2(원본): 명예퇴직원(자필 작성) 1부.
- 마. 서식3(원본): 서약서(자필 작성) 1부.
- 바. 서식4(원본): 명예퇴직요건 심사서 1부.
- 사. 서식5(원본 및 한글): 2025. 2. 28. 특별승진 희망자 명단 1부.
- 아. 서식6(원본 및 한글): 2025. 2. 28. 특별승진 공적조서 1부.
- 자. 서식7(원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차. 공무원연금법상 총재직기간 확인 서류(자필 서명, 연금담당자 원본 대조필) 1부.
- 카. NEIS인사기록카드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1부.
 - 인쇄 방법: NEIS-나의 메뉴-인사기록-기본사항
인사카드 구분-인사카드(전체) ‘ 항목선택 - 출력, 2쪽 모아찍기, A4 단면 인쇄
 -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한 사항 그대로 표시하여 제출
(성명, 직급, 경력, 상훈, 징계 등 해당란 검토한 곳에 형광펜 표시 등)

1. 대상자의 심사·결정

- 교육감은 교육장 및 고등(특수)학교장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2항과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
- 우선순위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3항,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원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제2항의 규정),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공무원) 순 등으로 함
-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 한 자를, 계급·재직기간 및 당해계급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오래된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2. 대상자 통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교육지원청과 소속 학교에 통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5년 8월말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 포함

3. 대상자의 결정 취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기 지급된 수당 환수

VI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1. 명예퇴직 확정 절차

- 명예퇴직 제외 대상 조회 및 확인: 경찰·검찰청, 교육부 및 감사관·감사원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 교육지원청 및 소속 학교 명예퇴직 확정 안내 통보

2. 명예퇴직수당 지급

- 명예퇴직수당 지급 예정일: **2025. 2. 28.** 본인 명의 급여계좌로 이체
- 예산 사정 등으로 위의 날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
-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함. 이 경우,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함

3. 수당 지급액의 산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52호, 시행 2025.3.8.)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980호, 시행 2025.3.1.)에 의거 산정

4.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 × 0.68 × 0.5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월봉급액 × 0.68 × 0.5 ×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명예퇴직수당 산출 금액 예시: 12,000,123원 ⇒ 12,000,120원(일의 자리 숫자는 버림)

VIII 행정사항

- 상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34084호, 시행 2023.12.29.)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2호, 시행 2025.3.8.),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교육부훈령 제511호, 시행 1994. 12. 1.)을 참고하여 시행

- 근속년수 및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 재직(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 정년 잔여기간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
-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 서약서는 관련 서식의 작성 요령(20~21쪽)을 반드시 읽고 작성
-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하여서는 안 됨
- 명예퇴직 제외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후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
- 2025년 2월 1일까지 호봉 승급자를 파악하여 퇴직 당시 호봉을 기록
-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희망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중 교감 이하만 가능하며**[휴직 중인 자,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교(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수석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는 제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특별승진임용)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공적조서[서식6]**를 제출하도록 함
 - ※ 소속 학교 및 기관에서는 희망자가 특별승진 제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

【특별승진 제한 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2항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시험문제 유출 또는 학생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8.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 문의처

구분	문의처	
	동부	서부
(공립) 유치원	장학사 이정희(605-5545)	장학사 강정현(600-9831)
(공립) 초등학교	주무관 김연수(605-5523)	주무관 박민주(600-9618)
(공립) 중학교	장학사 강민경(605-5541)	주무관 박희민(600-9647)
(공립) 특수학교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장학사 김혜선(380-4323)	
(공립) 고등학교 중등 교육전문직원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장학사 정성훈(380-4312)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보국(380-4335)	

[서식1]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작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4.>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른	
① 소속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교육공무원)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예시) 22,080,960(=5,412,000×0.68×0.5×12)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⑱ 교(원)감 확인 (서명 또는 인)	인사담당관 (서명 또는 인)	연금담당관 (서명 또는 인)	감사담당관 (서명 또는 인)	

※ 상단 음영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기재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육지원청을 경유하는 유치원/초/중학교만 기재)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소속기관의 장 직인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만 기재)

[서식2] 명예퇴직원 자필 작성(파란 글자 삭제 후 본인 해당 내용 자필 작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5.>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학교
2. 직 위: 'NEIS인사기록-직위'를 보고 작성 예) 교사(초등)
3. 직급·계급: 'NEIS인사기록-직급'을 보고 작성
예시)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2025. 2. 28.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경 유 인	
교(원)장	교육장
(직인)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경유인: 학교(유치원)-교(원)장 직인 날인
교육지원청-해당 교육장 직인 날인(교·특수학교는 날인 생략)

[서식3] 서약서 (파란 글자 삭제 후 본인 해당 내용 자필 작성)

서 약 서

○○학교

직위(급) 교사(초등) 성명 ○○○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퇴직 후에 누설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경 유 인	
학교장	교육장
(직인)	(직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경유인: 학교(유치원)-교(원)장 직인 날인
교육지원청-해당 교육장 직인 날인(고·특수학교는 날인 생략)

[서식4-1]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서(학교용)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	
	성명:	
명예 퇴직 제한 요건 해당 여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되기 위한 퇴직인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다른 법령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또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 변동이 예정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년 월 일 조사·작성자: ○○학교 교감 ○○○ 인 확인자: ○○학교장 (직인)		

※ '명예퇴직 제한요건 해당여부' 에 v함.

※ 조사·작성자: 학교·유치원은 교·원감, 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 직속기관은 소속 부장, 본청 각 과는 팀장

※ 확인자: 학교·유치원은 교(원)장, 지원청은 교육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본청 각 과장

[서식4-3]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서(교육청용)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	
	성명:	
명예 퇴직 제한 요건 해당 여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되기 위한 퇴직인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다른 법령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또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 지급 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p>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조사·작성자: 팀장 ○○○ 인</p> <p style="margin-left: 200px;">확인자: 과장 ○○○ 인</p>		

※ '명예퇴직 제한요건 해당여부' 에 √함.

※ 조사·작성자: 학교·유치원은 교·원감, 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 직속기관은 소속 부장, 본청 각 과는 팀장

※ 확인자: 학교·유치원은 교(원)장, 지원청은 교육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본청 각 과장

[서식5] 특별승진 희망자 명단

2025. 2. 28. 특별승진 희망자 명단

○○교육지원청/고등학교

작성자: 직 성명 인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비 고
	승진 전	승진 후		
예시 ○○초	교사	교감	()	
			()	
			()	
			()	
			()	
			()	
			()	
			()	
			()	

※ 유의 사항

- ① 소속란의 ()에는 시·군을 표시, 병설유치원은 '○○초병설유'로 기재
 - 특별승진 전 직위: 교사, 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으로 작성
 - 휴직 중인 자,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교(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수석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는 특별승진 대상 제외
 - 특별승진 후 직위(교(원)장, 교(원)감) 순으로 작성할 것
- ② 작성자: 유치원·학교는 교(원)감, 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 직속기관은 소속 부장, 본청 각과는 팀장
- ③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 제출

2025. 2. 28. 특별승진 희망자 공적조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직 급)	
<p>공적요지(1쪽 이내)</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구체적 내용 없이 막연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함</p> <p style="color: blue;">※ 서두에 ‘위 사람은~’, ‘상기인은~’, ‘홍길동은~’ 및 문장 마지막에 마침표(.) 사용 금지, ‘~기여함’ 또는 ‘~공헌함’으로 종결</p>			
조 사 자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인)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과 위 대상자가 특별승진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학교/기관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 color: red;">직인</div>			

※ 조사자: 교원-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팀(과,부)장

※ 추천관: 교원- 학교장, 교육전문직원- 기관장

[서식7]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등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를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령의 근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항,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사항, 형사사건 기소 유무,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항,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항 등
- 제공항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및 근속기간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공기관: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자체감사기관 포함), 교육부, 공무원연금공단, 취업예정기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합니다. 단,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 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참고자료 1] 작성요령

[서식1] 작성요령(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 신청인 기재란 및 서명란: 신청인 본인이 자필 작성

가.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 기재 (**해당 없으면 기재 생략**)

나.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 기재

다.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 기재

- 예시: **교사(근5호봉)**, **교장(근6호봉)**

※ 직급: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

라. ⑤~⑧은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일치

마.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재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내연금보기-재직정보-재직자기본정보-재직정보조회-
비고란 총재직기간 (2025년 2월 말일로 재산정하여 기재)

예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총재직기간(월)이 계산되므로,
총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년 (3월 1일 신규 발령 기준) 기재

바. ⑩정년퇴직일: 정년퇴직예정일 기록

사.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기재

2. 소속기관 기재란: 학교 교감(원감) 작성, 컴퓨터 입력 가능

※ ⑫~⑬란은 해당 학교 교감(원감) 작성하여 확인·서명(날인)하고, 교육(지원)청의 인사담당관과 연금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확인·서명함

가.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 (**연령정년에 "√"표시**)

- 나.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기재(62세)
 다. 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해당 없으면 기재 생략)
 라.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년/월 단위로 계산하여 기재
 [별첨1] 명예퇴직 수당계산서의 '잔여월수' 와 동일해야 함 (예시: 24개월이면 02년 00월)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속에 '수당지급대상 기간' 을 (10년00월)로 기록
 마. ⑯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별첨1] 명예퇴직 수당 계산서의 '수당지급예정액' 과 동일해야 함
 - 예시: 22,080,960(=5,412,000*0.68*0.5*12)
 - 10월 단위까지만 기록(일의자리 숫자는 버림)
 바. ⑰란은 학교 교감(원감)이 기재 후, 교육(지원)청 담당자 확인
 사. ⑱란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 학교 교감(원감) 및 소속
 기관 담당자(아래 표를 참고)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 혹은 도장 날인

구 분	인사 담당관	연금 담당관	감사 담당관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공란
특수학교 ·고등학교	본청 초중등인사담당장학관	본청 연금담당사무관	본청 감사담당팀장
직속기관	직속기관 인사담당관	직속기관 연금담당관	공란

※ 각 담당관은 실무자의 검토사항 확인 후 날인

(연금 담당관은 교육(지원)청 연금 담당자의 실제 조회 및 검토사항 확인 후 날인)

[서식2] 명예퇴직원 및 [서식3] 서약서

1. 신청인 본인 자필 작성

2. 직위(급): 'NEIS인사기록-직위'를 보고 작성 예) 교사(초등)

3. 직급·계급: 'NEIS인사기록-계급'을 보고 작성 예) 교사

※ 직급·계급: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

4. 경유인: (학교) 학교장 직인 날인 / (교육지원청) 해당 교육장 직인 날인

※ 특수학교·고등학교는 교육장 직인 생략

[참고자료 2]

‘공무원연금법상 총재직기간 확인 서류’ 출력 방법

* 2024. 10. 28. 일 이후에 조회한 출력물 사용

* 성명 하단에 자필 서명, 원본대조필(학교 연금담당자)

1.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 접속 ⇒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후 고객 ID 로그인

2. ‘연금서비스’ 항목에서 재직자정보-재직자 기본정보 ⇒ 『재직정보조회』 클릭



3. 기본재직기간의 비교란 『총재직기간』 확인 ⇒ 화면인쇄 클릭

4. 출력물의 성명 하단에 자필 서명, 원본대조필(학교 연금담당자)

[참고자료 3] 교원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4. 1. 5.>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06,700	21	3,377,600
2	1,861,400	22	3,502,200
3	1,916,900	23	3,625,800
4	1,972,200	24	3,749,800
5	2,028,000	25	3,873,600
6	2,083,600	26	3,997,900
7	2,138,700	27	4,127,500
8	2,193,500	28	4,256,800
9	2,247,400	29	4,392,000
10	2,285,900	30	4,527,800
11	2,324,400	31	4,663,100
12	2,384,200	32	4,798,300
13	2,492,800	33	4,935,600
14	2,601,800	34	5,072,400
15	2,710,700	35	5,209,500
16	2,819,900	36	5,346,000
17	2,927,700	37	5,464,800
18	3,040,700	38	5,583,700
19	3,152,900	39	5,702,800
20	3,265,300	40	5,821,2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별표 1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 근속가봉

②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 60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7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호봉	봉급	호봉	봉급
근1	5,897,200	근6	6,277,200
근2	5,973,200	근7	6,353,200
근3	6,049,200	근8	6,429,200
근4	6,125,200	근9	6,505,200
근5	6,201,200	근10	6,581,200